

2021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

「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 제11조 및 「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」 제7조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부모 등 양육자로 구성된 동아리를 공개 모집합니다. 자녀양육 관련 다양한 사례를 동아리 활동에서 스스로 배워나가길 희망하시는 부모 등 양육 동아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. 1. 18.

경기도지사

1 사업개요

- 공고기간 : 2021. 1. 18.(월) ~ 2021. 2. 3.(수) (17일간)
 - ※ 신청서 접수 : `21.1.18(월)~ `21.2.3(수) 18:00까지
- 사업기간 : 보조금 교부일 ~ `21년 12월 31일
- 신청자격 : 부모동아리(5인 이상 도민모임)
 -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자 하는 부모모임
 -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한 부모모임
- 주요지원 : 부모 동아리 지원, 네트워킹 지원
 - 동아리지원 : 자녀양육 관련 부모동아리 활동
 - 네트워킹 지원 : 부모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, 성과발표회 등 네트워킹
- 사업비 : 20백만원(도비100%)
- 사업량 : 총 20개 동아리(각 1백만원 이내*)
 - * 총 교부액의 30%이내에서 건가센터 퍼실리테이팅 활동비로 사용 가능

2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
지원내용	예산비목	지원금액
동아리 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	-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역량을 강화 하고자 하는 부모모임 지원 ※ 홍보비, 소모성물품구입비, 강사비, 교통비, 식비 등 각종 부모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	동 아 리 당 1,000천원 이내

※ 지원금액 및 선정 동아리 수는 선정·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.

○ 기본원칙

- 보조금 회계 처리는 「2021년 지원사업 회계운영안내서」를 준용하며, 선정된 부모동아리는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부모동아리는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(대표자 포함)으로 보조금전용 통장 발급받아야 하며, 필수교육(회계안내 등) 이수 후 사업 진행
- 보조금은 모임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
다만,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진행비(현장학습, 체험비), 활동비는 지원 가능

○ 제외대상

구 분	제외대상
사업요건 적격성	- 부모 동아리를 지원하는 단체·법인인 경우 - 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
사업취지 적합성	- 사업유형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(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부적합 등)
중복지원 여부	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,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이미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등 -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인·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등
기타	- 특정종교 교리 전파,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

□ 예산편성 가능 비목

재원	비 목	비고
보조금	① 홍보비(현수막, 인쇄물, 인터넷광고 등)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(재료비 등) ③ 진행비(장소·기자재·차량 임차료, 행사진행 등) ④ 강사료(강사비, 공연비, 회의비 등) ⑤ 활동비(교통비, 식비 등 여비)	자산형성적 물품구입비 불가

※ 사업비는 2021년 보조금 회계운영 안내서 기준에 맞게 집행·정산하여야 함

3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구 분	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사업
공고 및 접수기간	2021. 1. 18.(월) ~ 2021. 2. 3(수) (17일간)
사업추진 기 간	보조금 교부일 ~ 2021. 12. 31. 까지 ※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추진(시·군 예산편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제출서류 <붙임Ⅲ. 신청서식 참조>	① 사업신청서 (서식1) ② 사업실행계획서 (서식2) ③ 모임소개서 (서식3)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(서식4) ※ 신청서류 한글파일(hwp) 제출 * pdf파일 제출불가
접 수 처	- 시군 여성가족 담당부서(방문 또는 우편 제출) ※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☞ 시군에 접수(1차선정)후 도에 제출, 방문은 시군 담당자와 시간예약 후 방문, 우편 발송 시 시군 담당자 이메일로 우선 제출 ※ 붙임Ⅳ. 시군별 여성·가족 담당부서(접수처) 참조
문 의 처	관할 시군 여성·가족 관련 부서 또는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가족정책팀 ▶ 전화 : 031-8008-4406(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)

※ 유의사항

-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(hwp)은 시군 여성·가족담당부서로 제출(pdf파일 불가)
-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고, 제출서류는 일체 공개, 반환하지 않음

4

제안사업 심의선정

□ 심사방법

- 심사기준 : 참여도, 구체성, 효과성, 확장성 등(붙임 II)
- 심사절차
 - (1차) 서류검토(시·군) ⇒ 공모서류의 기본요건(제출서류 등) 및 제외대상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후 부적격을 제외하고 도에 제출
 - (2차) 최종선정(도)
 - 동아리 대표자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후 심사·선정
 - ※ 코로나로 서면심의 추진 시 심의를 위한 별도 자료 요청 가능
 -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
 - 선정 후 사업포기 동아리 발생 시 후순위 동아리 선정

5

최종 선정결과 공고

- 경기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g.go.kr> > 도정뉴스 > 고시공고)

6

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

□ 추진절차

순서	단계별	내 용	비 고
1	모임 통장개설	사업신청서상 모임명(대표명) 통장개설	통장개설 : 경기도 NH농협은행 등 (농협중앙회) ※ 수원시는 IBK 기업은행
2	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	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	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3	사업비 수령	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사업비 수령	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
4	사업비 집행 (사업수행)	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(강사료 등) 경비만 계좌이체	현금인출 사용 불가
5	사업비 정산	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	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

□ 각종 교육 및 상담 지원

순서	구분	시기	지원내용	비고
1	회계교육	3 ~ 4월 (선정결과 공고 후)	선정동아리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, 회계 정산방법	회계운영 안내서 배부
2	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	4 ~ 5월 (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)	선정동아리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	
3	모임별 개별상담	4월 ~ 11월	지역별,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	시군, 도
4	정산서 작성 컨설팅	'22.1월 까지 (정산기간)	사업완료후 동아리에서 작성 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	

7

유의사항

-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(가족다문화과)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(2021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동지원 공모사업 회계운영 안내서) 등에 따라야 함
-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
 -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
 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
 -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 -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 지원 철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,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
-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

일 정	추진내용	비고
2021. 1.~2.	▶ 사업 홍보 및 공고 ▶ 사업제안서 신청(부모동아리) 및 접수(시군)	
2021. 2.	▶ 1차 서류심사(시군), 공모사업 제출(시군→도)	
2021. 2.~3.	▶ 2차 발표심사,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등(도) ※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	
2021. 3.~4.	▶ 보조금 회계교육 (시군) ▶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보조금신청 ▶ 시군 추경예산 편성,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	
2021. 4.~11.	▶ 사업추진,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(도, 시군)	
2021. 11.~12.	▶ 성과 발표 및 활동공유회	
2021. 12.~2022. 1	▶ 사업완료 및 정산서 작성·제출	

[붙임 I ~IV]

I. 예산비목별 세부내용

II. 심사기준

III. 신청서식

① 사업신청서

② 사업실행계획서

③ 모임소개서

④ 모임구성원 서명부

IV. 시군별 접수처(여성가족 담당부서)

[붙임 1]

< 보조금 편성 비목 > ※ 자산취득비 편성불가

비 목	사용처	주요내용 및 첨부서류	비고(단가 등)
홍보비	홍보에 필요한 현수막, 리플렛, 홍보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시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체크카드결제 <첨부서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전용 체크카드영수증,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, 관련 증빙 사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수막 60,000원 이내(개당) - 홍보비 총액은 보조금총액의 30%이내 준수
소모성 물품 구입비	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, 재료비 등 지급 ※ 소모성 물품만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결제 -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(도서, 가구 등) 구입 불가 <첨부서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,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- 행사(강의) 등 결과보고서, 증빙사진 ※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- 계약시 가격 비교자료 첨부 (단일품목 100만원 이상)
진행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, 대관료(공연, 전시), 차량 등 단기 임차하는 경우 - 벤치마킹, 체험비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임구성원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는 임차료 지급 불가 - 여행자보험료, 입장료 등 진행비 - 보조금 체크카드결제 <첨부서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계약서,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, 행사(강의) 결과보고서, 서명부, 증빙사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료 실비 적용 - 진행비 총액은 보조금총액의 30%이내 준수
강사비	사업추진 관련 외래강사 및 공연단 섭외, 전문가 초빙 회의 진행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- 소규모 공연 지원이 원칙 - 계좌입금 <첨부서류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의(공연단)확인서, 계획자료, 강사 프로필(이력서 포함) - 참가자 서명부,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(거래내역확인증), 원천징수 영수증, 증빙사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사료 등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50%이내 준수 (보조금이 500만원인 경우 강사비는 250만원 이내) - 동일인 / 동일단체 월 125,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(기타 소득 8.8%) ※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- 공연비용(공연단체에 지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: 10만원 •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: 20만원 • 행사진행(사회)자 : 10만원/1인만

비 목	사용처	주요내용 및 첨부서류	비고(단가 등)
활동비	사업집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(여비, 숙박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임구성원에만 지급 가능 - 계좌입금 - 단체 외부활동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교통비 지급 불가 - 여비(식비 / 교통비 / 숙박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내여비 : 1인당 일비 2만원(4시간 이내는 1만원) • 도외 여비 : 실비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숙박비 : 1가족 1실 5만원 이내 ▶ 교통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시외버스, 철도, 선박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※ 택시, 항공료, 유류비 등은 자부담으로만 지출 ▶ 식사비 : 1인 1일 8천원 이내 ※ 주류비용 불가 <p><첨부서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사(활동)계획, 결과보고, 활동사진, 회의록, 서명부, 영수증, 이체확인서(출금거래명세표), 통장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20%이내 준수 - 모임구성원만 지급 - 차량임차료와 중복사용 불가

※ 강사료 지급 기준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	지급대상
일반 1급	최초 1시간	230,000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-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- 정부출연기관의 장
	초과(30분이상)	120,000원 이내	
	1일 최대	350,000원 이내	
일반 2급	최초 1시간	120,000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분야 전문자격증(또는 박사학위)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
	초과(30분이상)	100,000원 이내	
	1일 최대	220,000원 이내	
일반 3급	최초 1시간	60,000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1~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
	초과(30분이상)	40,000원 이내	
	1일 최대	100,000원 이내	

[붙임 II]

< 심사항목 및 배점 >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
참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 구성원 참여도 ○ 동아리의 구성 및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원 역할의 구체성,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-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교육, 경험 등 전문성 정도 	30
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아리 형태의 사업모델 적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고자 하는 방향의 명확성 - 창의적인 아이디어, 사업계획의 적절성 ○ 사업의 구체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- 동아리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, 실행가능성 	30
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실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문제 해결 및 자녀관계 개선에 실효성 정도 - 하고자 하는 목적에의 적합성 ○ 사업의 공익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-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서 필요성 정도 	20
지속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속가능성 정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에 대한 호응도,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-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○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적인 계획과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 -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 	20

[붙임III]

[서식 1] 공모사업 신청서

`21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신청서			
모임명 (15자 이내)		대표자	
모임소재지 주소		연락처	전화번호) 010-
			E-mail)
제안사업명			
활동계획	※ 활동취지, 활동대상, 프로그램 내용 등을 요약 작성		
사업예산 (보조금)	천원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			
<p>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『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사업』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표제안자 : _____ (서명/날인)</p> <p><첨부서류> ①사업실행계획서 1부. ②모임 소개서 1부.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도지사 귀하</p>			

7. 비목별 예산계획

구분	비목	금액 (단위:천원)	세부내역 및 산출기초
	계		
세부 사업명	홍보비		※ 보조금 총액의 30% 이내
	소모성물품구입비		
	진행비		※ 보조금 총액의 30% 이내
	강사비		※ 보조금 총액의 50% 이내
	활동비		※ 보조금 총액의 20% 이내
	⋮		

※ 보조금 편성불가 비목 : 자산취득비, 단체운영경비, 현금성 지출경비(시상금, 장학금 등)

[서식 3] 부모 동아리 소개서 서식

『 부모 동아리』 소개서				
동아리현황	모임명			
	대표자명		휴대폰	
			이메일	
	실무자명		휴대폰	
			이메일	
	모임소재지 주소		홈페이지 (블로그 등)	※ 있는 경우에 한함
구성원수	총 명 (남 , 여)			
동아리소개	<p>※ 모임계기, 구성, 특징, 문제점,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</p>			
동아리 주요 활동이력 (5줄 이내로 요약)	<p>※내·외부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(해당 있을시)</p>			
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	<p>※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 기재(해당 있을시) (예) 행정자치부, 녹색체험마을, 2012.6~9, 지원액 30백만원</p>			

[서식 4] 부모동아리 구성원 서명부 (서명필수)

부모 동아리 구성원 서명부

구 분	구성원 인적사항				담당	자필 서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함.
	성명	성별	주소	연 락 처		
1					대표자	
2			※ 자필 서명		실무자	
3			※ 상세주소까지 기재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
※ 개인정보 수집 목적 : 2021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공모사업 선정 심사시 활용
(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)

※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, 한글파일 별도작성 제출

[붙임Ⅳ]

< 도청 / 시·군청 여성·가족 담당부서(접수처) >

연번	시군명	부서명	연 락 처	비 고
1	경기도	가족다문화과	031-8008-4406	
2	수원시	여성정책과	031-228-2496	
3	용인시	여성가족과	031-324-2325	
4	성남시	여성가족과	031-729-2912	
5	부천시	여성정책과	032-625-2932	
6	안산시	여성가족과	031-481-2604	
7	화성시	여성가족과	031-5189-3942	
8	안양시	가족여성과	031-8045-2485	
9	평택시	여성가족과	031-8024-2915	
10	시흥시	여성가족과	031-310-2613	
11	김포시	여성가족과	031-980-5604	
12	광명시	여성가족과	02-2680-6216	
13	광주시	여성보육과	031-760-4422	
14	군포시	여성가족과	031-390-0807	
15	이천시	여성보육과	031-645-3602	
16	오산시	가족보육과	031-8036-7485	
17	하남시	여성보육과	031-790-5637	
18	안성시	가족여성과	031-678-2279	
19	의왕시	여성아동과	031-345-2453	
20	여주시	여성가족과	031-887-2266	
21	양평군	주민복지과	031-770-2261	
22	과천시	사회복지과	02-3677-2259	
23	고양시	여성가족과	031-8075-3346	
24	남양주시	여성아동과	031-590-8857	
25	의정부시	여성가족과	031-828-4242	
26	파주시	여성가족과	031-940-4491	
27	양주시	여성보육과	031-8082-5802	
28	구리시	여성가족과	031-550-2954	
29	포천시	여성가족과	031-538-2263	
30	동두천시	여성청소년과	031-860-2370	
31	가평군	행복돌봄과	031-580-2584	
32	연천군	사회복지과	031-839-2266	

※ 시·군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경우 각 시군 별도 문의

<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당자 >

시군명	기관명	연 락 처	비 고
수원시	건강가정지원센터	031-245-1310	
성남시	건강가정지원센터	(복정센터) 031-729-9327 (신흥센터) 031-754-3927	
고양시	건강가정지원센터	031-969-4041	
용인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323-7131	
부천시	건강가정지원센터	032-326-4212	
안산시	건강가정지원센터	031-501-0033	
안양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8045-5572	
남양주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556-8212	
화성시	건강가정지원센터	031-267-8786	
평택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615-3952	
의정부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878-7117	
시흥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319-7997	
파주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949-9161	
광명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2-6265-1366	
김포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996-5920	
군포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395-1811	
광주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798-7137	
이천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637-5525	
양주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858-5681	
오산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378-9766	
구리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556-3873	
안성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677-9336	
포천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532-2062	
의왕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429-8931	
하남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794-5158	
여주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886-0321	
양평군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775-5957	
동두천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863-3801	
과천시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2-503-0070	
가평군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031-582-9902	
연천군	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	31-835-0093	